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안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451

발의연월일: 2021. 3. 2.

발 의 자 : 안민석·김승원·양정숙

송갑석 • 도종환 • 서동용

이성만 · 김두관 · 이재정

조오섭 · 전혜숙 · 김영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재외동포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, 정부 차원의 행·재정적 지원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.

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·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됨.

그런데 현재 교육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재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편성,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,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'재외교육지원센터'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.

이에 현행법에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지정, 공무원 파견 및 운영 경비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0조

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재외교육지원센터) ①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재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- 1. 재외교육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컨설팅
- 2. 재외교육기관에 관한 통계조사
- 3. 재외교육기관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지원
- 4. 재외교육기관의 기관장, 교직원 등 관계자 대상의 연수 프로그램 운영
- 5. 재외교육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
- 6. 재외교육기관·재외교육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행사 개최 지원
- 7. 그 밖에 재외국민 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
- ② 교육부장관은 재외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필요

하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외교육 지원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.

- ③ 교육부장관은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지정·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외교육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교

육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재외교육지원센터는 제30조의2의 개정규

정에 따라 지정된 재외교육지원센터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제30조의2(재외교육지원센터) ①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재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1. 재외교육기관 소재 지역별특성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지원 2. 재외교육기관의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및 운영자 대상의연수 프로그램 운영 3. 재외교육기관·재외교육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행사 개최 지원 4. 그 밖에 재외국민 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장
	율적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장 관이 정하는 사업 ② 교육부장관은 재외교육지원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 여 필요하면 「국가공무원법」

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

 을 재외교육지원센터에 파견할

 수 있다.

- ③ 교육부장관은 재외교육지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지정·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